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가합9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손홍락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마	
		담당변호사 오경석	
변	론	종	결
			2020. 4. 23.
판	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6. 7. 5. 접수 제94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3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016. 4. 8.자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4. 15.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2016. 4. 15.자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6.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2016. 4. 8.자 매매계약을 수정하여 새로운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016. 6. 17.자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2016. 6. 17.자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2016. 6. 17.자 매매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항. 부동산 매매대금 : 13억 5천만 원(C조합대출금, D 채무 1억 6천만 원 포함)

*부동산 매매대금 지불방법

1.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서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2. 1차 매매대금은 위 부동산 담보의 C조합 대출금과 연체이자 전액을 담보해지 조건으로 우선 상환하고, 3천5백만 원을 원고에게 지불한다.
3. 2차 매매대금은 토목공사와 토지의 지목변경을 '공장'으로 변경한 후, '공장'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의 재감정을 실시, 피고가 기계설비보증서발행 금융기관대출을 진행할 때,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토지의 필지에 해당하는 대출금액은 위 부동산의 외상 토목공사대금(*주, 피고의 추가 차입금도 포함한다)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액을 원고에게 추가 지불한다.
4. 2차 은행대출금 중 피고에서 진행하는 사업자금의 설비보증서대출금은 원고의 부동산매매대금과 별개로 한다.
5. 매매대금의 잔금은 분할된 필지 토지의 공장용지 분양을 통해서 지급하며, '공장' 용지분양은 피고와 원고가 공동으로 서로 협의하에 진행한다.

3항. 위 부동산의 막대금(미수금)이 완불될 때까지 피고의 주식 30%는(부동산 포함) 원고 E 사장이 소유하며, 막대금 정산이 끝나면은 피고의 주식 30%는 반환한다.

4항. 2차 매매대금이 지불될 때까지 위 부동산의 금융권 대출이자는 원고 E 사장이 전액 부담한다. 이자가 연체될 시에는 이 계약의 잔금은 무효가 되며, 연체금 발생을 피고에 즉시통보를 해야한다.

원고는 대출이자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자필기재 부분)

계약금 : 일억 삼천오백만 원(3항기준)

중도금 : 오억 구천 이백만 원

잔금 : 위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진행함

*2016. 4. 8. 약정서는 폐기한다.

다. 피고는 2016. 7.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5.자 매매를 원인(등기 편의를 위해 이 사건 2016. 6. 17.자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2016. 5. 1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등기원인으로 기재, 이하 위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2016. 5. 15.자 매매 계약서'라고 한다)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6. 7. 5. 접수 제 94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5. E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고 C 조합에 피담보채무액 542,360,322원을 변제하여 아래 표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하고(2번), 같은 날 3, 4번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2016. 10. 31. 3, 4번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5, 6번), 같은 날 7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6. 11. 7. 8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아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특정할 때에는 각 순번에 따라 '1번, 3번, 4번'과 같은 방법으로 특정한다).

순번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1	근저당권설정	2013년11월1일 제18552호	2013년11월1일 설정계약	640,000,000원	A 주식회사	C조합

2	위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16년7월5일 제9496호	2016년7월5일 해지			
3	(1)근저당권설정	2016년7월5일 제9499호	2016년7월5일 설정계약	520,000,000원	F	G조합
4	(2)근저당권설정	상동	상동	351,000,000원	F	H조합
5	위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16년10월31일 제16151호	2016년10월31일 해지			
6	위 4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16년10월31일 제16153호	상동			
7	근저당권설정	2016년10월31일 제16154호	2016년10월31일 설정계약	1,068,000,000원	주식회사 B	I조합
8	근저당권설정	2016년11월7일 제16495호	2016년11월7일 설정계약	180,000,000원	주식회사 B	J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2016. 6. 17.자 매매계약 제3항에 따른 주식 30%(부동산 포함) 담보제공의무(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 의무'라고 한다) 및 계약금 1억 3,500만 원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위 의무를 2019. 9. 23.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고 한다)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9. 9.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5,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2016. 4. 8.자 매매계약이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파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실제 대표인 K이 이 사건 2016. 6. 17.자 매매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2016. 5. 15.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만약, 이 사건 2016. 6. 17.자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이 사건 2016. 5. 15.자 매매계약서도 진정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한다면, 피고의 이 사건 담보제공의무는 잔금 지급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잔금 지급 시까지 그 의무가 존속한다. 원고는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피고는 계약금 지급의무 및 이 사건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2019. 9. 17. 이 사건 내용증명으로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오히려 위 의무가 이미 이행되었거나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2016. 6. 17.자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¹⁾.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2016. 6.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편의상 2016. 5. 15.자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이 유효하므로 말소대상이 아니다.

2) 이 사건 담보제공의무는 계약금 지급을 담보로 하는 것인데, 피고는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해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C조합에 피담보채무액 542,360,32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계약금 지급의무가 이행되었고 이 사건 담보제공의무는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3) 만약, 이 사건 2016. 6. 17.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1) 원고는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유지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동안 지급한 매매대금 명목 금원과 투입한 자금 등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말소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2016. 5. 15.자 매매계약서의 위조 여부

1)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394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2016. 6. 17.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거나 이 사건 2016. 5. 15.자 매매계약서가 K에 의해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오히려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K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여 진행된 관련 형사사건 1심(대구지방법원 2018고단3090호)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2016. 6. 17.자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K은 E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얻어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L으로 하여금 이 사건 2016. 5. 1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9노973호)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K이 이 사건 2016. 5. 15.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지 않은 매매계약을 기초로 위조된 계약서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2016. 6. 17.자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1) 이행지체

가) 이 사건 담보제공의무의 존속기간

(1)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의무가 피고의 잔금 지급 시까지 존속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의무는 계약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계약금의 지급 시까지만 존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담보제공의무의 이행이 지체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먼저 이 사건 담보제공의무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본다.

(2) 이 사건 2016. 6. 17.자 매매계약서 제3항에서 '막대금(미수금) 완불될 때까지 피고의 주식 30%(부동산포함) 원고 E 사장이 소유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일반적으로 '막대금'은 '잔금'을 의미하는 점 및 담보제공의 성격에 비추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또는 그 후 즉시 이 사건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고, 그 담보제공은 피고가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매매계약서 말미에 자필로 '계약금 : 일억 삼천 오백만 원(3항 기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담보제공의무가 계약금을 지급할 때까지만 존속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때 이 사건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의무는 피고가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또는 잔금 지급이 면제되었을 경우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존속한다.

나) 피고의 잔금 지급의무의 소멸 여부

(1) 이 사건 2016. 6. 17.자 매매계약서 제4항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이자 지급의무를 지체할 경우 피고의 잔금 지급의무는 소멸한다(원고는 위 조항이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위 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원고측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는 이 사건 이자 지급의무가 '채무자'가 원고인 1번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관련된 대출금채무에만 한정하여 발생하므로 2016년 9월 이전에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상 그 이행지체가 없어 피고의 잔금 지급의무는 존속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이자 지급의무는 채무 명의를 불문하고 '2차 매매대금이 지불될 때까지' 존속하는데 원고가 2016년 9월부터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잔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담보제공 의무의 이행지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이 사건 이자 지급의무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금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자 지급의무는 채무자가 원고인 1번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관련된 대출금채무에 한정하여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2016. 6. 17.자 매매계약서 제4항에서 원고가 이자 연체 발생사실을 피고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이자 연체 발생 시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하는 점, 원고 명의 채무의 이자 연체 발생 사실은 채무자인 원고에게 통보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임의경매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고가 피고에게 연체 발생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 명의 채무의 이자 연체 발생 사실은 채무자이자 담보물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통보될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굳이 통보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보면, 이 사건 이자 지급의무는 채무자가 원고인 1번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관련된 대출금채무에 한정하여

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매수인이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하여 이를 말소시키는 방식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가 지급되는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대출금 이자는 그 채무 명의를 매도인인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거래의 통념에 부합한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7, 8번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와 상의없이 설정되어 피고가 그 대출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7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기존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채권최고액이 428,000,000원 더 증액되어 원고가 그에 대한 대출금 이자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지우게 하는 것으로 형평에 반한다.

④ 비록 계약서 기재상 '2차 매매대금이 지불될 때까지' E이 이 사건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 사건 2016. 6. 17.자 매매계약 당시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언제 말소될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이자 지급의무의 최대 존속기한을 2차 매매대금 지불 시로 설정해 둔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2016. 7. 5.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이 사건 이자 지급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원고 또는 E에게 그 이후에 설정된 3, 4, 7, 8번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대출금 이자 지급의무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이자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잔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이 사건 담보제공의무도 존속하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담보제공의무도 이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담보제공의무는 이행지체에 빠

져 있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이자 지급의무의 존속기한을 2차 매매대금 지급 시까지로 보아 원고가 2016년 9월부터 그 이행을 지체하여 이 사건 2016. 6. 17.자 매매계약서 제4항에 따라 피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더라도, 앞서 살펴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나머지 중도금 149,639,678원(= 계약금 135,000,000원 + 중도금 592,000,000원 - C조합 대출금 변제액 542,360,322원 - 원고 대표자 E 지급액 3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중도금 완납 시까지 피고의 이 사건 담보제공의무는 존속한다. 그러나 피고가 현재까지 나머지 중도금 지급 및 이 사건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담보제공의무는 여전히 이행지체에 빠져 있다.

2) 이행거절

한편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내용증명에 대하여 이 사건 담보제공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그 이행을 거절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최고 및 해제의 의사표시 여부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2019. 9. 17. 피고에게 위 의무를 2019. 9. 23.까지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이 사건 2016. 6. 17.자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9. 9. 19.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가 소유권이전 등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 사건 내용증명은 정지조건부 해제의사표시로서 유효하고, 현재까지 피고가 위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2016. 6. 17.자 매매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내용증명에서 정한 최고 기간의 말일 다음날인 2019. 9. 24.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다. 원상회복

1) 원고가 이 사건 2016. 6. 17.자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6. 7. 5. 접수 제94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명목 금원과 투입한 자금 상당액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항변한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7, 8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말소대상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7, 8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여 이들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한 말소등기의 경료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민사집행법 제29조 제9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법상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말소되는 것이므로

로, 위 근저당권자들은 그 말소에 대하여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실상 위 각 근저당권의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인 1,041,000,000원(= 7번 근저당권의 2019. 12. 4. 기준 피담보채무액 861,000,000원 + 8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위 1,041,0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 577,360,322원(= C조합 대출금 변제액 542,360,322원 + 원고 대표자 E 지급액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공제하더라도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돈을 반환해야 함은 계산상 명백하다²⁾.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그동안 투입한 자금 등도 반환받아야 한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산출내역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 상환 등이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와 대가적·이행상의 관련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2018. 11. 9.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M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9. 5. 9.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N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나, 이보다 앞선 2017. 10. 26.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카합64호)가 경료되었다. 따라서 위 2건의 근저당권은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내용에 위반한 것이어서 원고가 그 효력을 부정하여 말소시킬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계산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위지현

판사 이준석

판사 강수희

목 록

1. 성주군		공장용지 10405평방미터
2. 성주군		주1 지상
	(도로명주소) 성주군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제조시설)	516.8평방미터
	부속건물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부속창고)	425.85평방미터
	경량철골조 및 철골조 판넬지붕 2층 공장	
	1층 공장(숙소)	74.2평방미터
	2층 공장(사무실)	74.2평방미터
3. 성주군		답 384평방미터
4. 성주군		답 2281평방미터
5. 성주군		답 446평방미터
6. 성주군		답 2343평방미터
7. 성주군		전 516평방미터
8. 성주군		임야 182평방미터
9. 성주군		전 897평방미터
10. 성주군		답 311평방미터
11. 성주군		묘지172평방미터
12. 성주군		답145평방미터
13. 성주군		전195평방미터